

용인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-45호

2022년도 제6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

2022년도 제6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
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.

2022년 7월 13일
용인시인사위원회위원장

1. 시험계획

○ 채용분야 및 인원

채용분야 [근무부서]	직급	선발 인원	근무기간 (週근무시간)	직무내용	비고
공보전문위원 [공보관]	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나 급	1명	1년 (주35시간)	■ 시정 홍보 보도자료 작성 ■ 언론사 인터뷰 자료 작성 ■ 기획 보도자료 작성 ■ 홍보 협력 업무 지원	
아동학대전담 [아동보육과]	지방사회복지주사보 (일반임기제)	1명	2년 (주40시간)	■ 아동학대 신고접수, 현장 조사 및 응급 보호 ■ 피해 아동, 피해 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·조사 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(아동학대 예방교육, e아동행복지원 사업, 아동보호 전문기관 관리 등) ■ 순번에 의한 24시간 비상근무체제 유지	
아나운서 [공보관]	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 급	1명	1년 (주35시간)	■ 시 주요행사 사회자 수행 ■ 자체 대담방송 기획 및 진행 ■ 시정뉴스, 톡톡정보 시나리오 작성 ■ 홍보영상 기획(시나리오 등) ■ 각종 안내 음원 녹음(전화, 행사 등) ■ 촬영 지원(분장, 소품 등) ■ 생생현장 리포트 기획 및 진행 ■ 대외홍보광고물 녹음(라디오, 내레이션) ■ 유튜브 영상 관리 및 콘텐츠 기획	

2. 응시자격

○ 공통요건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
- 아동학대전담 분야의 경우, 「아동복지법」 제29조의3 및 「아동·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에 따른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주소지 : 제한없음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
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-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은 제3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1. 공공기관
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 4.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-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.
1.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: 퇴직일
 2.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)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 3.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 4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된 날 또는 사면,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
 5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 6.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

- 응시연령

응시연령	해당 생년월일	채용분야
20세 이상	2002.12.31. 이전 출생자	공보전문위원, 아동학대전담, 아나운서

○ 자격기준(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함)

직무분야	자 격 기 준
공보전문위원 [공보관]	다음 각 호의 자격을 하나 이상 갖춘 자 1.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○ 관련분야(경력) :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및 민간(언론사 포함) 등에서 언론홍보·공보 등 각종 홍보 및 취재, 보도 활동 분야 경력
아동학대전담 [아동보육과]	다음 각 호의 자격을 하나 이상 갖춘 자 1.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○ 필수 자격요건 :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(2급 이상) 자격증 소지자 ○ 관련분야(경력) :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분야 경력 ○ 우대사항 -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기관 상담 업무 1년 이상 종사자 - 경찰공무원 경력자 또는 운전면허 소지자 - 심리상담 분야 자격증 소지자(자격증 : 임상심리사, 청소년상담사 등 국가 또는 학회 자격을 의미함)

직무분야	자 격 기 준
아나운서 [공보관]	다음 각 호의 자격을 하나 이상 갖춘 자 1. 학사학위를 취득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○ 관련분야(경력) :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아나운서, MC, 리포터 관련 경력 ○ 우대사항 : 미디어, 신문방송, PR 등 관련분야 전공자

※ **경력증명서에 관련분야 경력이 기재되어야 함**

※ 경력은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**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**
(**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**은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)

⇒ 관련근거 :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제17조제5항

※ 경력기간은 **주 40시간 근무기준**(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, 시간 비례 계산)

※ 모든 경력은 군대 등 의무복무 경력 제외

※ 「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」 및 「용인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」별표5의3에 따라 일반(시간선택제)임기제공무원의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

3. 시험방법

▶ 1차 시험 : 서류전형

- 채용예정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

▶ 2차 시험 : 면접시험

-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구술에 의한 문답식으로 검정

- 평정항목 (5개 항목)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44조

⇒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응용능력,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

○ **합격자 결정** :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

○ **추가합격자 결정** :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○ **불합격 기준** :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“하”로 평정 또는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“하”로 평정

4. 채용일정 및 원서접수

○ 채용일정

모집공고	원서접수	서류전형 (합격자발표)	면접시험	최종합격자 발표
'22. 07. 13.(수) ~ 07. 25.(월)	'22. 07. 21.(목) ~ 07. 25.(월)	'22. 07. 29.(금) 전·후	'22. 08. 04.(목) ~ 08. 05.(금)	'22. 08. 10.(수) 전·후
○ 시험일정 및 합격자는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확인 ⇒ 공고 확인 : 용인시청 홈페이지(www.yongin.go.kr) 채용/시험정보란 ○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○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및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				

○ 접수방법 :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(인터넷접수 불가, 대리접수 가능)

○ 등기우편 접수

-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
 ▶ 주소 : [우17019]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(삼가동) 용인시청 인사관리과
- 택배 및 퀵서비스 접수 불가
- 응시분야 직급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**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·동봉**(대한민국 '정부수입인지' 사용불가)
 ※ 우편통상환은 금융업무로 우체국 마감시간(16:30 등) 유의
- 우편봉투 겉면에 '2022년 제○○회 용인시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'표기
- 우편접수 시 응시표는 서류전형 전까지 이메일로 회신 예정 ※ 이메일주소 반드시 기재 요망
- 우편접수 시 기재서류 미비 등에 대하여는 응시자 본인 책임임

○ 방문접수

- 접수장소 : 용인시청 종합민원상담창구(시청 1층)
 ※ 용인시청(1층) 민원여권과에서 응시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 제출
- 접수시간 : 평일 09:00~18:00 ※ 토·일요일·공휴일 및 점심시간(12:00~13:00) 제외
 ※ 접수마감일 18:00 이후에는 원서접수를 할 수 없음

5. 제출서류 ※스테이플러 사용 및 양면인쇄 금지

① 응시원서 1부(붙임1/필수)

- 응시수수료(용인시 수입증지)
 * **7천원** : 공보전문위원, 아동학대전담, 아나운서
- 수입증지 판매처 : 용인시청 1층 민원여권과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경우 면제
- 응시 접수 당일 응시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반환 가능

② 이력서 1부(붙임2/필수)

-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함

▶ 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지 않은 경력은 기재 금지

③ 자기소개서 1부(붙임3/필수)

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(붙임4/필수)

⑤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(붙임5/필수)

⑥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(붙임7/필수)

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및 개인정보 제공·이용동의서 각 1부(붙임8/필수)

⑧ 최종학교 졸업(학위)증명서 1부(필수)

- 석사 이상 졸업자의 경우 학사 이상의 증명서 모두 제출
- 고등학교졸업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
- (붙임9)의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는 공고문의 응시자격 기준 전공학과와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(해당자에 한함)

⑨ 경력(재직)증명서 (필수)

-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전에 발급된 증명서 상 경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
-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,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

(주의사항)

- 근무기간, 담당업무, 주당 근무시간, 발급담당자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
- 경력증명서 발급 서식에 주당 근무시간, 발급담당자 확인란이 없을 경우 발급담당자에게 수기로 확인받아 제출하거나 (붙임6)의 경력증명서 서식으로 제출
-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관인 날인이 있어야 함.
- 국민연금, 고용·건강보험 납입증명서는 경력증명서로서의 효력 불인정
-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 증명서 제출, 미제출 시 불인정
- 프리랜서,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,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
-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 등 증빙자료 제출

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(필수)

- [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발급 (<http://www.nhis.or.kr>) 또는 1577-1000번]
- 경력증명서상 근무경력 확인용이며,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- 미해당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 가능

⑪ 자격증 사본(필수자격인 경우, 해당자에 한함)

⑫ 각종 대회 수상, 상훈, 우대사항 등 증빙자료 1부(해당자에 한함)

- ※ 외국어로 기재된 증명자료(졸업증명서, 학력·경력증명서 등)의 경우 한글 번역본을 제출
- ※ 모든 서류는 사본 제출이 원칙이나 발급기관이 모호하거나 해외인 경우 원본 지참

6. 보수 및 기타사항

- 근무기간 :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함
- 연 봉 : 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등급별 연봉한계액의 **하한액을 기준으로 책정**하되, 하한액의 120%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
 - ※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책정 가능(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제35조 제3항)
 - ※ 공무원 연금 등 연금 수급자는 반드시 연금 정지 여부 확인(공단에 문의)
- 기타수당 :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의함
 - ※ 직급보조비, 정액급식비, 초과근무수당, 가족수당, 자녀학비보조수당 등
- 복리후생 : 복지포인트 지급, 공무원연금, 건강보험 적용
 - ※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에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(단,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채용분야	채용직급	채용인원	약정기간	연 봉 액		週당 근무시간
				하한액(기준액)	상한액	
공 보 전 문 위 원	지 방 시 간 선 택 제 임 기 제 나 급	1명	1년	45,437천원	68,191천원	35시간
아 동 학 대 전 담	지방사회복지주사보 (일 반 임 기 제)	1명	2년	45,237천원	63,693천원	40시간
아 나 운 서	지 방 시 간 선 택 제 임 기 제 다 급	1명	1년	39,583천원	55,732천원	35시간

○ 응시자 유의사항
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- 용인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.
-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,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드립니다.
-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.
- **(재공고)**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(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 원서접수일, 시험일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합니다. 재공고분야 응시자는 별도의 추가 원서접수 없이 기존 접수의 효력이 인정됩니다.

- 경력증명서 등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발급된 증명서상 경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,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-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최종합격 후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등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6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재공고 없이 순위에 따라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본 시험계획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[용인시 홈페이지\(www.yongin.go.kr\)](http://www.yongin.go.kr) 시험정보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채용절차 및 원서접수 문의	인사관리과 인재채용팀 (031-324-2113)
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